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5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2. 인·허가 등의 의제에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가사항 추가 ..	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4. 8.

다. 회 부 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 대한 방제비용 지원, 민간단체 및 지역역주민의 자발적인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재선충병 발생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의 2020~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하였고, 감염된 시·군·구는 2020년 124곳에서 2024년 153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16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u>조직·인력·예산</u> 및 장비 확충	1. ----- <u>조직·인력</u>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u>

현행	개정안
	<u>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같은 기간 305만 7,344그루의 감염목이 발생하였고, 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2년 124곳에서 현재 154곳으로 감염 지역이 확대되는 등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투입 예산¹⁾ 】

(단위 : 그루,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발생 현황	406,362	307,919	378,079	1,065,967	899,017	3,057,344
투입 예산	54,367	50,966	50,410	93,346	80,495	329,584

(자료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70:30의 비율로 투입되고 있어,²⁾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특히 소나

1) 최근 5년간 시·도 및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투입 예산은 참고자료(참고1~3) 참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7호는 산림병해충방제 중 약제대금의 경우, 100%, 기타의 경우 국비 50%로 기준보조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의 내역사

무재선충병 발생이 많은 경북, 경남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방제비용 부담이 큰바,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조제1호에서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장비의 확충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22호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 수행의 근거법령·성격에 따라 정률(최고 100%부터 최저 20%) 또는 정액 보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산림청은 개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책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찬성하는 입장이나,

업인 소나무재선충병방제는 제122호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여 70%를 보조함.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4조제1호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예산
확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인·허가 등의 의제에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가사항 추가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의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허가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인·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6조의3(인·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u> ② (현행과 같음)

인·허가 등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 등을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신고 등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⁴⁾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죽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가능한데,⁵⁾

산림보호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에 대한 허가가 현행법상 인·허가 의제 대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행위에 관한 허가사항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인·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 5)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재선충병을 신속하게 방제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산림병해충의 방제 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 대상 허가의 범위가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한 허가’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고 1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단위 :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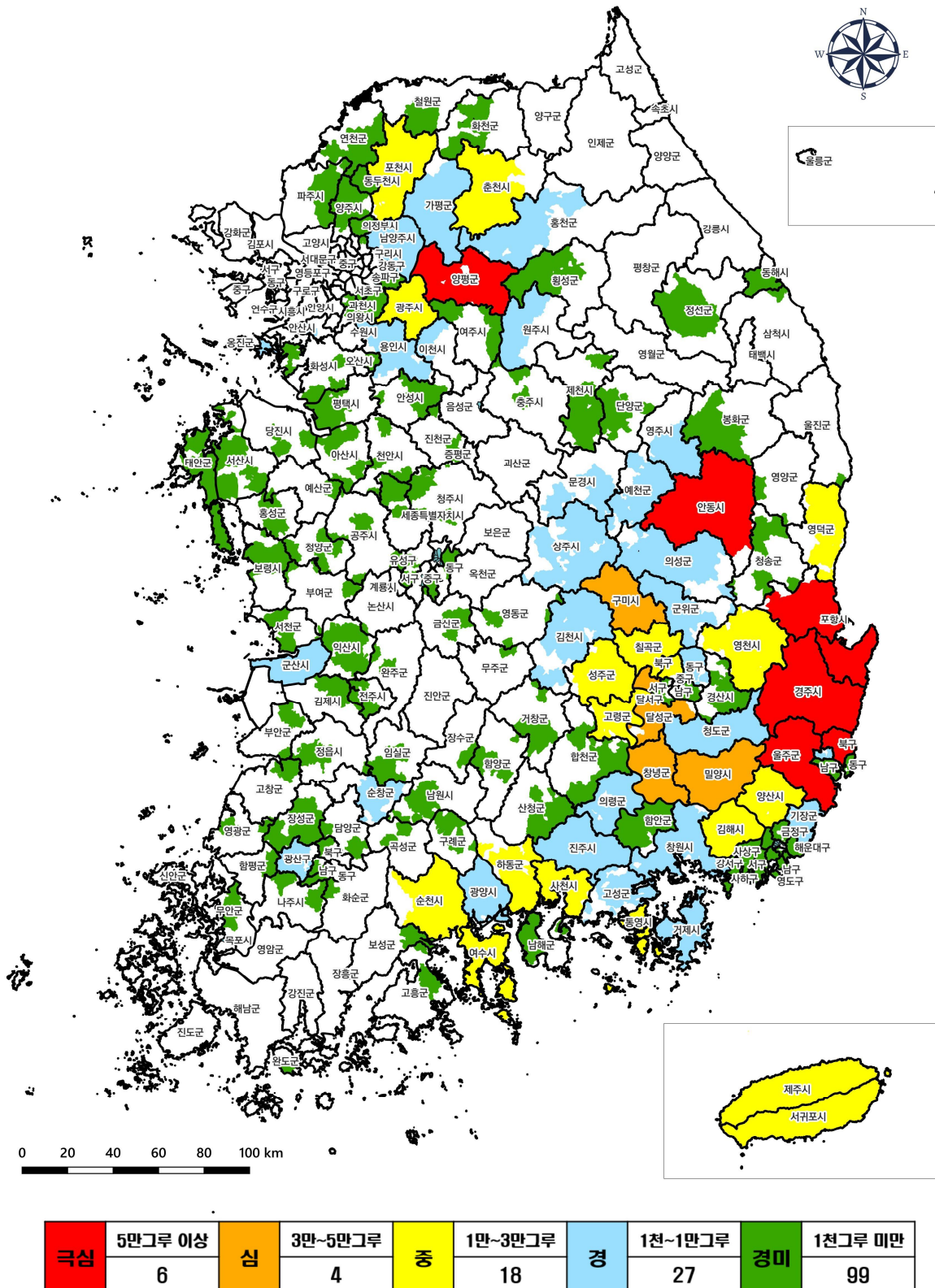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406,362	307,919	378,079	1,065,967	899,017
서울	0	0	0	0	9
부산	1,621	2,589	3,365	4,846	3,995
대구	3,258	3,136	11,729	52,171	43,939
인천	0	0	0	0	0
광주	61	280	764	3,520	1,739
대전	0	4	11	5	4
울산	74,187	30,988	33,192	44,737	84,593
세종	28	16	19	0	0
경기	31,527	8,009	15,592	34,781	26,112
강원	11,079	5,969	7,792	18,880	3,746
충북	81	45	61	95	114
충남	173	326	1,086	1,583	2,193
전북	2,710	1,378	1,747	1,905	2,078
전남	11,241	20,305	21,067	25,662	19,476
경북	134,330	113,872	113,668	476,710	398,915
경남	50,506	58,567	96,267	277,704	210,871
제주	46,226	27,885	29,899	28,898	22,432
산림청	39,334	34,550	41,820	94,470	78,801

(자료 : 산림청)

* 시·도 현황은 공·사유림, 산림청 현황은 국유림 기준

참고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구 현황



(자료 : 산림청)

참고 3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나무재선충병 투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4,367	50,966	50,410	93,346	80,495
서울	177	168	168	191	268
부산	704	707	845	1,227	872
대구	565	937	918	2,954	3,041
인천	137	94	89	104	78
광주	43	196	214	648	511
대전	72	63	69	90	114
울산	4,316	3,542	3,458	6,076	4,526
세종	95	101	101	119	91
경기	5,400	3,900	3,808	6,153	4,855
강원	1,200	1,000	934	1,732	1,397
충북	133	622	554	786	637
충남	636	966	1,071	1,063	1,251
전북	1,232	1,360	1,476	1,186	1,221
전남	1,709	2,587	2,717	3,701	3,096
경북	12,297	10,070	9,705	22,751	20,397
경남	9,865	8,523	8,419	21,663	17,863
제주	5,491	2,618	2,602	3,272	2,700
산림청	10,295	13,512	13,262	19,630	17,577

(자료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본예산(국비) 기준 / 국비·지방비 비율 : 70:30